

“영광 홍농 승마장 조성사업”을 위한 **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**

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일원의 “영광 홍농 승마장 조성사업”을 위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
2021. 11. 4.



1. 실시계획인가신청의 요지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위치 :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5-7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체육시설 - 승마장
- 명칭 : 영광 홍농 승마장 조성사업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영광군수(산림공원과)
- 주소 :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

라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면적 24,740㎡

- 건축면적 : (당초)766.97㎡ → (변경)3,591.53㎡
- 연 면 적 : (당초)747.02㎡ → (변경)3,571.58㎡
- 건 폐 율 : (당초)3.51% → (변경)16.03%
- 용 적 율 : (당초)3.42% → (변경)14.44%

명칭 내용	관리사	마 방	창 고	퇴비사	펌프실	교육장	실내승마장 (신축)	합 계
건축규모	지상1층	지상1층	지상1층	지상1층	지상1층	지상1층	지상1층	-
건축면적	96㎡	372.6㎡	96㎡	60㎡	4㎡	138.37㎡	2,824.56㎡	(당초)766.97㎡ (변경)3,591.53㎡
연 면 적	96㎡	372.6㎡	96㎡	60㎡	4㎡	118.42㎡	2,824.56㎡	(당초)747.02㎡ (변경)3,571.58㎡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예정일 : 2022. 12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

번호	토지소재지	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토지소유자		이해관계인		비고
	읍면	리	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	
1	홍농	진덕	380-2	채	2,569	2,569	영광읍 중앙로 203	영광군			
2	홍농	상하	3	전	965	965	〃	〃			
3	홍농	상하	4	전	1,967	1,967	〃	〃			
4	홍농	상하	5-7	채	18,703	18,703	〃	〃			
5	홍농	상하	5-14	채	188	188	〃	〃			
6	홍농	상하	5-23	임	348	348	〃	〃			
총 계					24,740	24,740					

2. 관련 설계도서 및 도면 : 게재생략

3. 관계 도서는 영광군 산림공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 고시

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

1. 소규모 위험시설 현황

대상시설(지역)		통행금지		정비계획 (사업비)	비고
시설명(지역명)	위치	사유	기간		
용현1교	법성면 용덕리 259-6 일원	붕괴위험	'21.11.15. ~ 해제시	2022년 이후 (250백만원)	

2.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: 전라남도 영광군청

3.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 : 2021. 11. 15.

4. 문의처 :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☎ 061-350-5684

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·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제25조,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1. 1.

영 광 군 수



○ 도로명주소(부여·폐지) 내용

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 (효력발생일)	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사유
별	지	기	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(☎061-350-5777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건물번호 부여 · 폐지 내역

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 시 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
전남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296	전남 영광군 법성면 신장길3길 105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577-3	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74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261-1	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3길 16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486	전남 영광군 대마면 동삼로9길 68-3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군서면 남계리 25-3	전남 영광군 군서면 서금길1길 35-7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487	전남 영광군 영광읍 북호로1길 150-22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-2	전남 영광군 법성면 영광로 35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329	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00-14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152-5	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송로 41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30-17	전남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2길34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953	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2길 87-65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불갑면 부춘리 348-4	전남 영광군 불갑면 부춘길 73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 200	전남 영광군 대마면 영장로 560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322-8	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174-12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076-7	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683-14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금리 715-9	전남 영광군 군서면 군서로3길 61-9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700-2	전남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 47		건물신축

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
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90	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52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40-12	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234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451	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로2길 8-33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86	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2길 58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079-3	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672-13	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643	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1길 14		건물신축
<h1>이 하 빈 칸</h1>			

「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일

영 광 군 수

1. 조 례 명 :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사유
 -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
3. 주요 개정내용
 - 제7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
 - 2021년 12월 31일 → 2026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 5년 연장
4. 의견제출
 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(참조 : 스포츠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) 57022 /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 영광군 스포츠산업과
전화) 061-350-5252/ FAX) 061-350-5360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5. 기 타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담당자(전화 : 061-350-525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

영광군조례 제 호

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[붙임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7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「영광군 사무위임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영광군 사무위임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0월 28일

영 광 군 수



1. 조 례 명 :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상위법령(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) 인용 조문 정비 : 안 제1조

나.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함 : 안 제1조, 제2조, 별표1

- 안 제1조

- (생략)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사무과장,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(생략)

→ (생략)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(생략)

- 안 제2조

- 영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,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.

→ 영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
- 별표1 삭제(기존 별표2를 별표1로 이동)

4. 일부개정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의견제출

-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(전화 : 061-350-52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0. 28. ~ 2021. 11. 7.(10일간)

나. 의견 제출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우) 57036 /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총무과

전화) 061-350-5236/ FAX) 061-350-5592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 로, “군의회 사무과장, 읍면장” 을 “읍면장” 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회사무과장” 을 “읍면장” 으로, “별표 1과 같고,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” 를 “별표 1과” 로 한다.

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읍·면장 위임사항(제2조 관련)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종합민원실	1.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	「주민등록법」 제2조	읍·면장
총무과	1. 읍·면의 업무담당 지정 및 소속직원 사무분장 2. 읍·면 소속직원의 소속 읍·면 내 전보 3. 읍·면 소속직원 복무 감독 및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	읍·면장
안 전 관리과	1. 재해이재민 조사, 응급구호 및 상황보고 2. 구호환자 진료신청	「재해구호법」 제7조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	읍·면장
재무과	1. 개별주택 특성조사 2. 부동산(주택, 건축물, 토지) 과세대장 정리 및 조사 3. 불용품 매각처리 4.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(읍면청사 및 부속물) 및 보존재산의 유지 관리 5. 공유재산 대부허가	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	읍·면장
사 회 복지과	1. 자활근로사업 지도 및 감독 2.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3.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0조 「의료급여법」 제8조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5조	읍·면장
노 인 가정과	1. 매장·화장 및 개장 신고 2. 개인묘지 설치·변경 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	읍·면장
산 림 공원과	1. 불 놓기 허가	「산림보호법」 제34조	읍·면장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<u>군의회사무과장, 읍면장</u>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임사항) 영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관장하는 사무 중 <u>의회사무과장</u>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<u>별표 1과</u> 같고, <u>읍면장</u>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<u>별표 2와</u> 같다.</p> <p>별표1 영광군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</p> <p>1.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· 승진임용 · 전보 · 징계 · 면직 등 임용권 전반</p> <p>2.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</p> <p>3.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----- ----- <u>읍면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2조(위임사항) ----- ----- <u>읍면장</u>----- ----- <u>별표 1과</u> ----- ----- -----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읍·면장 위임사항(제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소관 부서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위 임 사 무 명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근 거 법 령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임 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종합민원실</td> <td>1.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</td> <td>「주민등록법」 제2조</td> <td>읍·면장</td> </tr> <tr> <td>총무과</td> <td>1. 읍·면의 업무담당 지정 및 소속직원 사무분장 2. 읍·면 소속직원의 소속 읍·면 내 전보 3. 읍·면 소속직원 복무 감독 및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</td> <td>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</td> <td>읍·면장</td> </tr> <tr> <td>안전관리과</td> <td>1. 재해이재민 조사, 응급구호 및 상황보고 2. 구호환자 진료신청</td> <td>「재해구호법」 제7조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</td> <td>읍·면장</td> </tr> <tr> <td>재무과</td> <td>1. 개별주택 특성조사 2. 부동산(주택, 건축물, 토지) 과세대상 정리 및 조사 3. 불용품 매각처리 4.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(읍면청사 및 부속물)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 5. 군유재산 대부허가</td> <td>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</td> <td>읍·면장</td> </tr> <tr> <td>사회복지과</td> <td>1. 자활근로사업 지도 및 감독 2.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3.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</td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0조 「의료급여법」 제8조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5조</td> <td>읍·면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 기관	종합민원실	1.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	「주민등록법」 제2조	읍·면장	총무과	1. 읍·면의 업무담당 지정 및 소속직원 사무분장 2. 읍·면 소속직원의 소속 읍·면 내 전보 3. 읍·면 소속직원 복무 감독 및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	읍·면장	안전관리과	1. 재해이재민 조사, 응급구호 및 상황보고 2. 구호환자 진료신청	「재해구호법」 제7조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	읍·면장	재무과	1. 개별주택 특성조사 2. 부동산(주택, 건축물, 토지) 과세대상 정리 및 조사 3. 불용품 매각처리 4.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(읍면청사 및 부속물)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 5. 군유재산 대부허가	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	읍·면장	사회복지과	1. 자활근로사업 지도 및 감독 2.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3.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0조 「의료급여법」 제8조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5조	읍·면장
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 기관																						
종합민원실	1.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	「주민등록법」 제2조	읍·면장																						
총무과	1. 읍·면의 업무담당 지정 및 소속직원 사무분장 2. 읍·면 소속직원의 소속 읍·면 내 전보 3. 읍·면 소속직원 복무 감독 및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	읍·면장																						
안전관리과	1. 재해이재민 조사, 응급구호 및 상황보고 2. 구호환자 진료신청	「재해구호법」 제7조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	읍·면장																						
재무과	1. 개별주택 특성조사 2. 부동산(주택, 건축물, 토지) 과세대상 정리 및 조사 3. 불용품 매각처리 4.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(읍면청사 및 부속물)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 5. 군유재산 대부허가	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	읍·면장																						
사회복지과	1. 자활근로사업 지도 및 감독 2.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3.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0조 「의료급여법」 제8조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5조	읍·면장																						

노 인 가정과	1. 매장·화장 및 개장 신고 2. 개인묘지 설치·변경 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	읍· 면장
산 림 공원과	1. 불 놓기 허가	「산림보호법」 제34조	읍· 면장

별표2

읍·면장 위임사항(제2조 관련)

<삭제>

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 기관
종합 민원실	1.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	「주민등록법」 제2조	읍· 면장
총무과	1. 읍·면의 업무담당 지정 및 소속직원 사무분장 2. 읍·면 소속직원의 소속 읍·면 내 전보 3. 읍·면 소속직원 복무 감독 및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	읍· 면장
안 전 관리과	1. 재해이재민 조사, 응급구호 및 상황보고 2. 구호환자 진료신청	「재해구호법」 제7조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	읍· 면장
재무과	1. 개별주택 특성조사 2. 부동산(주택, 건축물, 토지) 과세대장 정리 및 조사 3. 불용품 매각처리 4.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(읍면청사 및 부속물) 및 보존재산의 유지 관리 5. 공유재산 대부허가	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	읍· 면장
사 회 복지과	1. 자활근로사업 지도 및 감독 2.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3.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0조 「의료급여법」 제8조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5조	읍· 면장
노 인 가정과	1. 매장·화장 및 개장 신고 2. 개인묘지 설치·변경 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	읍· 면장
산 림 공원과	1. 불 놓기 허가	「산림보호법」 제34조	읍· 면장

**‘영광 스포츠센터 조성사업’ 을 위한 군관리계획(운동장) 결정(변경) 및
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전 주민 열람·공고**

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일원의 영광 스포티움 내 ‘영광 스포츠센터 조성사업’ 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(체육시설-운동장) 중요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·공고합니다.

2021. 11. 1.

영 광 군 수

1. (변경)운동장 중요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

- 중요시설에 대한 조성계획(총괄)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
운동시설	104,359.0	증) 1,573.0	105,932.0	42.0	42.6	
관리시설	21,832.0	-	21,832.0	8.8	8.8	
도로 및 광장	74,041.0	감) 59.0	73,982.0	29.8	29.8	
녹 지	48,267.6	감) 1,514.0	46,753.6	19.4	18.8	
계	248,499.6	-	248,499.6	100.0	100.0	

구 분	면 적(m ²)					구성비(%)					비 고
	기정	변경				기정	변경				
		계	도로	축구장	스포츠센터		계	도로	축구장	스포츠센터	
운동시설	26,348	26,348	-	20,004	6,344	49.2	49.2	-	37.4	11.8	
관리시설	7,481	7,481	-	3,594	3,887	14.0	14.0	-	6.7	7.3	
도로 및 광장	8,603	8,603	5,168	3,305	130	16.0	16.0	9.6	6.2	0.2	
녹 지	11,146	11,146	-	9,227	1,919	20.8	20.8	-	17.2	3.6	
계	53,578	53,578	5,168	36,130	12,280	100.0	100.0	9.6	67.5	22.9	

-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

기능	구분	도면번호	세부시설명		면적(m ²)						최초결정일	비고	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건축면적		연면적			
								기정	변경	기정			변경
	변경		합계		248,499.6	-	248,499.6	10,897.44	12,137.80	16,705.23	18,927.96		
운동시설	변경	1	계		104,359.0	1,573.0	105,932.0	10,059.69	11,300.05	15,728.98	17,951.71	1995.7.8	
	기정	1-1	종합운동장	종합운동장	30,596.0	-	30,596.0	2,359.14	2,359.14	3,771.46	3,771.46		
	기정	1-2	보조경기장 본부석	보조경기장 본부석	18,495.0	-	18,495.0	40.94	40.94	64.68	64.68		
	기정	1-3	국민체육센터	국민체육센터	4,589.0	-	4,589.0	3,561.85	3,561.85	6,513.45	6,513.45		
	기정	1-4	실내수영장	실내수영장	2,611.0	-	2,611.0	1,873.98	1,873.98	2,997.80	2,997.80		
	기정	1-5	농구장	농구장	1,486.0	-	1,486.0						
	기정	1-6	테니스장1	테니스장1	5,171.0	-	5,171.0	532.42	532.42	532.42	532.42		
	기정	1-7	테니스장2	테니스장2	2,776.0	-	2,776.0	-	-	-	-		
	기정	1-8	축구전용경기장 본부석	축구전용경기장 본부석	8,905.0	-	8,905.0	96.36	96.36	141.12	141.12		
	기정	1-9	풋살경기장	풋살경기장	1,080.0	-	1,080.0						
	기정	1-10	실내체육관2관	실내체육관2관	2,148.0	-	2,148.0	1,595.00	1,595.00	1,708.05	1,708.05		
	기정	1-11	축구전용구장2	축구전용구장2	9,898.0	-	9,898.0						
	기정	1-12	축구전용구장3	축구전용구장3	9,919.0	-	9,919.0						
	기정	1-13	웨이트 트레이닝장	웨이트 트레이닝장	1,760.0	-	1,760.0						
	변경	1-14	다목적체육시설	다목적체육시설	3,717.0	-1,511.0	2,206.0						스포츠센터 편입에 따른 축소
	기정	1-15	씨름장	씨름장	154.0	-	154.0						
변경	1-16	족구장	스포츠센터	1,054.0	3,084.0	4,138.0	-	1,240.36	-	2,222.73		스포츠센터 변경	
관리시설	기정	2	소계	소계	21,832.0	-	21,832.0	837.75	837.75	976.25	976.25		
	기정	2-1	주차장소계	주차장소계	20,436.0	-	20,436.0	-	-	-	-		
	기정	2-1-1	주1	주1	6,616.0	-	6,616.0						
	기정	2-1-2	주2	주2	4,632.0	-	4,632.0						
	기정	2-1-3	주3	주3	1,224.0	-	1,224.0						
	기정	2-1-4	주4	주4	906.0	-	906.0						
	기정	2-1-5	주5	주5	4,522.0	-	4,522.0						
	기정	2-1-6	주6	주6	2,536.0	-	2,536.0						
	기정	2-2	화장실소계	화장실소계	608.0	-	608.0	185.15	185.15	185.15	185.15		
	기정	2-2-1	화장실1	화장실1	296.0	-	296.0	48.46	48.46	48.46	48.46		
	기정	2-2-2	화장실2	화장실2	81.0	-	81.0	48.46	48.46	48.46	48.46		
	기정	2-2-3	화장실3	화장실3	150.0	-	150.0	53.52	53.52	53.52	53.52		
	기정	2-2-4	화장실4	화장실4	81.0	-	81.0	34.71	34.71	34.71	34.71		
	기정	2-3	장비창고	장비창고	223.0	-	223.0	221.00	221.00	221.00	221.00		
	기정	2-4	부속차고	부속차고	81.0	-	81.0	81.00	81.00	81.00	81.00		
	기정	2-5	관리본부석	관리본부석	423.0	-	423.0	311.50	311.50	450.00	450.00		
기정	2-6	화장실2	화장실2	61.0	-	61.0	39.10	39.10	39.10	39.10			
도로및광장	변경	3	소계	소계	74,041.0	-59.0	73,982.0						
	기정	3-1	광장소계	광장소계	38,126.0	-	38,126.0						
	기정	3-1-1	광장1	광장1	2,597.0	-	2,597.0						
	기정	3-1-2	광장2	광장2	27,464.0	-	27,464.0						
	기정	3-1-3	광장3	광장3	2,959.0	-	2,959.0						
	기정	3-1-4	광장4	광장4	5,106.0	-	5,106.0						
	변경	3-2	내부도로	내부도로	26,193.0	-59.0	26,134.0						스포츠센터 편입에 따른 축소
	기정	3-3	청소년놀이마당	청소년놀이마당	1,329.0	-	1,329.0						
	기정	3-4	보행자도로	보행자도로	8,034.0	-	8,034.0						
	기정	3-5	산책로	산책로	359.0	-	359.0						
녹지	변경	4	소계	소계	48,267.6	-1,514.0	46,753.6						
	변경	4-1	녹지	녹지	48,267.6	-1,514.0	46,753.6						스포츠센터 편입에 따른 축소

2. (변경)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요지

가. 사업위치 :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18-2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종류 : 체육시설 - 운동장

○명칭 : 영광 스포츠센터 조성사업

다. (변경)사업(부지) 면적 : 운동장(248,499.6㎡) 중 스포츠센터 부지(12,280㎡-확정측량)

○건축규모 : 화장실·스포츠센터 증축 : 건축면적 1,279.46㎡(화장실 39.10㎡, 스포츠센터 1,240.36㎡), 건축연면적 2,261.83㎡(화장실 39.10㎡, 스포츠센터 2,222.73㎡)

○건축면적 : 당초 39.10㎡ → 변경 1,279.46㎡

○연 면 적 : 당초 39.10㎡ → 변경 2,261.83㎡

○건 폐 율 : 당초 0.3184% → 변경 10.4190%

○용 적 율 : 당초 0.3184% → 변경 18.4188%

라. 사업의 목적 : 스포츠센터 조성을 통해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지원시설 확충

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○주소 :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

○성명 : 영광군수(스포츠산업과)

바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○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

○준공예정일 : 2023. 12. 31.

3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 참조

4. 관련 설계도서 및 도면 : 게재생략(영광군청 산림공원과에 비치)

5. 열람일시 및 장소

가. 열람기간 : 2021. 11. 1. ~ 11. 15.(14일간)

나.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: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(☎061-350-4851)

다.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
연번	토지소재지			지번	지목	공부상면적(㎡)		편입면적(㎡)		소유자		비고
	군	읍	리			기정	변경(확정)	기정	변경(확정)	주 소	성 명	
합계						254,092.6	254,291.8	248,499.6	248,499.6			
1	영광	영광	단주	666	채	24,403.4	24,403.4	24,403.4	24,403.4		영광군	
2	"	"	"	667	채	12,271.7	12,271.7	12,271.7	12,271.7		영광군	
3	"	"	"	668	채	7,873.0	7,873.0	7,873.0	7,873.0		영광군	
4	"	"	"	669	채	10,691.0	10,691.0	10,691.0	10,691.0		영광군	
5	"	"	"	670	채	25,292.8	25,292.8	25,292.8	25,292.8		영광군	
6	"	"	"	671	채	19,586.5	19,586.5	19,586.5	19,586.5		영광군	
7	"	"	"	672	채	38,420.9	38,420.9	38,420.9	38,420.9		영광군	
8	"	"	"	673	채	11,074.4	11,074.4	11,074.4	11,074.4		영광군	
9	"	"	"	674	채	12,152.3	12,152.3	12,152.3	12,152.3		영광군	
10	"	"	"	675	채	1,219.0	1,219.0	1,219.0	1,219.0		영광군	
11	"	"	"	676	채	7,549.4	7,549.4	7,549.4	7,549.4		영광군	
12	"	"	"	677	채	15,588.4	15,588.4	15,588.4	15,588.4		영광군	
13	"	"	"	679	도	5,422.3	5,422.3	4,536.0	4,536.0		영광군	
14	"	"	"	680	도	246.0	246.0	246.0	246.0		국(건설교통부)	
15	"	"	"	681	도	13.0	13.0	13.0	13.0		영광군	
16	"	"	"	682	임	37.0	37.0	37.0	37.0	사유지	김석조	
17	"	"	"	678	도	14,040.7	14,040.7	9,334.0	9,334.0		영광군	
18	영광	영광	단주	685	채	48,210.8	36,130.0	48,210.8	35,930.8		영광군	축구장
19	"	"	"	685-1	채	-	12,280.0	-	12,280.0		영광군	스포츠센터

2021. 7.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『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』 제10조 규정에 의거 2021. 7.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합니다.

2021. 10. 29.

영 광 군 수

1.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일 : 10. 29.
2.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사항

지 역	결정·공시 필 지 수	공 시 가 격	비 고
영 광 군	1,550	각 필지별 m ² 당 가격	

3. 공시가격 열람 : 군, 읍·면사무소 및 홈페이지 등
4. 이의신청 :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이의가 있을시
가. 기 간 : 10. 29 ~ 11. 29.(30일간)
나. 제 출 자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다. 제 출 처 : 군청 및 읍·면사무소 민원실
라. 제출방법 :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·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
5. 이의신청처리
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. 28까지 그 결과를 통지함.